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

의 안 번 호	3271

제출연월일 : 2005. 11. 8.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등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1)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되, 동 계획에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정책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5조)

(1)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는 용구·용품 및 의료기기 제조 분야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 추진(안 제7조)

(1)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고령친화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표준화가 필요함.

(2)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안 제9조)

(1)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경영지원·정보제공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을 전담하여 추진할 기관이 필요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고령친화 우수제품 등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표시(안 제

12조 및 제15조)

(1) 고령친화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 등을 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제품 등의 제조·설치자 또는 우수사업자에게 기술개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집중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단기간에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주택·시설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의 제공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생활 또는 건강지원에 관한 서비스

사. 노인을 위한 한방 제품 또는 서비스

아.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에 관한 서비스

자.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 분야
2. 노인을 위한 주택의 개조, 관리 및 개·보수 분야
3. 노인의 간병·수발 등 노인요양서비스 분야
4. 노인을 위한 금융·재무 설계 및 자산관리 분야
5.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콘텐츠의 제조·개발 분야
6.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생활 및 건강운동의 지원 분야
7.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추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 추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고령친화사업자는 고령친화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령친화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고령친화산업 기술·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5. 고령친화제품등을 사용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업

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하여 위탁한 사업

⑤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제12조(우수제품등 및 우수사업자의 지정·표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 우수제품·주택 또는 시설(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우수제품등 또는 우수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제품등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품등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 또는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우수제품등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우수제품등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제품등 또는 우수사업자가 그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제품등의 표시 부착 등의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등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등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고령친화사업자는 우수제품등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우수제품등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등의 제조·설치자 또는 우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 기술지도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제1항에 규정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4장 보 칙

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수제품등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본다.

재정소요 추계서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법률안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추진 등), 제9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제15조(우수제품등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2. 재정소요 원인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이 거대한 수요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 대두

○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연구의 확산, 종합적인 지원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

3. 재정소요 추계내역

가. 추계의 기본방향 및 전제

○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수요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산업이 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임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유도와 함께 **일정부문의 정부지원이 긴요**

○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70%**(정부 70%, 민간 30%), **특별회계 30%**(정부 70%, 지자체 15%, 민간 15%) 비율로 부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06년 2월 구체적인 소요재원 제시 예정

나. 추계결과

○ '06~'15년까지 10개년간 2,040억원 재정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원센터 건립 : 일반회계

○ 연구개발 : 균특회계

4.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고령화문제의 해결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

5. 작성자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 (손건익)

<연도별 재정소요 추계표>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	**68**	**120**	**185**	**247**	**210**	**210**	**240**	**240**	**260**	**260**
전문인력양성	-	10	10	10	10	10	10	10	10	10
연구개발	50	80	130	180	200	200	230	230	250	250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8	30	45	57	-	-	-	-	-	-
세출재원조치	**68**	**120**	**185**	**247**	**210**	**210**	**240**	**240**	**260**	**260**
중앙정부	53	96	146	193	150	150	171	171	185	185
○ 일반회계	42.5	79.2	118.7	155.2	108	108	122.7	122.7	132.5	132.5
○ 특별회계	10.5	16.8	27.3	37.8	42	42	48.3	48.3	52.5	52.5
○ 기금	-	-	-	-	-	-	-	-	-	-
지자체	2.25	3.6	5.85	8.1	9	9	10.35	10.35	11.25	11.25
민 간	12.75	20.4	33.15	45.9	51	51	58.65	58.65	63.75	63.75

주1) 연구개발은 일반회계 및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며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추진
주2) 전문인력양성 및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